사단법인 대한볼링협회
여성위원회 규정

2012. 8. 8.제정

제1조(설치근거 및 명칭) 대한볼링협회 정관 제32조 제1항에 따라 설치 운영하며 그 명칭은 여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위원회는 여성볼링 진흥과 관련된 사항을 연구 조사하고 이사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여성볼링의 육성지도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여성볼링행사에 관한 사항
3. 여성볼링발전에 관한 사항
4. 기타 여성볼링에 관한 사항
5. 위 각 호와 관련된 부대사업

제 4 조(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1인
2. 부위원장 1인
3. 위원　　약간인

②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회장이 사무처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① 위원장은 회장이 추천한 자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위촉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회장이 선임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 사업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자로서 회장이 위촉한다.

제6조(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

한다.

제7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대한볼링협회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하며 집행부 임기와 같이 한다.

②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2. 위원이 질병, 해외출장,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실정법 위반 등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회의 소집) 회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

제10조(의결정족수) 위원회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11조(긴급한 업무처리)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 위원회 결의를 대신할 수 있다.

제12조(제척 및 회피)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2012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